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21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6년 6월 22일) 상정 의결

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 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 )

#### 가. 제 안 이 유

-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범명 및 근거항목 변경과 대형 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규칙에서 규정 하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 요 내 용

-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“영등포구 홈페이지” 및 “전자지불제도 활용” 추가(안 제8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)
-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기준을 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,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” 을 “영 제2조제7호, 규칙 제8조 별표4” 규정을 적용(안 제10조제2항)
- 특수규격봉투의 색을 노랑색으로 지정(안 제16조)
- 대형폐기물수집·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정(안 제27조제1항)
-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의 환불규정 신설(안 제27조의2)
-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근거법명 변경(안 제31조제1항)
  - 생활보호법 시행령 ⇒ 국민기초 생활보장법
  -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⇒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 (안 제32조 및 제32조의2)

- 「별표1」(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)에 폐형광등, 페스티로폼 등의 항목추가, 「별표5」의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개정, 「별표7」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「별표8」의 무단투기자 신고 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
- 별지8,9,10,11 (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)개정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 專門委員 이 남 식 )

-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 법령 및 근거항목을 변경하고,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하며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
- 안 제8조 및 제29조에는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기존의 동사무소 신고와 병행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,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(인증기 사용)또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전자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,
- 안 제27조에는 우리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열거된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은 29개 품목 43개 규격으로 되어 있어 이를 108개 품목 168개 규격으로 배출품목 및 규격을 다양화하여 수수료 부과에 합리적을 기하고자 한 것이며,
- 안 제31조에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수정하였고,
- 안 제32조 과태료 부과기준 14 가항에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꽂초,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서울특별시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3만원으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였으며,
- 안 제32조 및 제32조의2에는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